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세오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58,324,000원(금이억오천팔백삼십이만사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세오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새오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저장분배서버(System X3550 M4 등) 61대, 스토리지(Storwize V7000 G1 등) 5,688TB 샌스위치(Brocade 300 등) 11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24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월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서버 주요 부품 상태 및 시스템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스토리지 디스크·컨트롤러 상태 및 저장공간 사용률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샌스위치 포트·연결 상태 및 오류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서버·스토리지·샌스위치 간 연결 및 저장장치 접근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하드웨어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구성 변경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펌웨어 업데이트(유상 업그레이드 제외) 적용 관련 기술지원 - 장애 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 임시 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장비 증설, 하드웨어 수리, 부품 교체 및 유상 펌웨어·라이선스 업데이트 비용은 별도 청구 - 대체 장비는 장애 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임시 지원하며, 장애 장비의 수리·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 - 펌웨어 업데이트 및 구성 변경은 서비스 영향 검토 후 사전 협의하여 수행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인콘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168,696,000원(금일억육천팔백육십구만육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 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인콘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인콘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 [24개월]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영상통합관제솔루션[TRIUM I V1.0 (4,035조)] 1식
영상정보제공시스템(VES V1.0) 1식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24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월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영상통합관제솔루션 및 영상정보제공시스템의 기능·성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시스템 운영·기능 사용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소프트웨어 패치·업데이트(유상 업그레이드 제외) 적용 관련 기술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소스코드 제공, 신규 기능 개발, 라이선스 증설 및 유상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인텔리빅스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91,872,000원(금구천일백팔십칠만이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인텔리빅스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인텔리빅스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선별관제 운영서버(IR5039MS 등) 13대
선별관제시스템[VIXAI-120G v4.0(VIXAI-120B) (2,820조)] 1식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24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 · 제공 - 월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선별관제 운영서버의 주요 부품 상태 및 시스템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선별관제 영상분석 및 이벤트 검출 기능의 기능·성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시스템 운영·영상분석 설정 및 기능 사용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소프트웨어 패치·업데이트(유상 업그레이드 제외) 적용 관련 기술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소스코드 제공, 신규 기능 개발, 라이선스 증설, 유상 버전 업그레이드,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디케이앤트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3,760,000원(금이천삼백칠십육만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디케이앤트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 · 공급사	㈜디케이앤트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카메라객체정보활용솔루션[에이아이 브레인 v1.0 Discover-D 1CH (707조)] 1식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8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 · 제공 - 분기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 · 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카메라 객체정보 활용솔루션의 기능 · 성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카메라 객체정보 수집 · 처리 및 연계 상태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시스템 운영 · 기능 사용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소프트웨어 패치 · 업데이트(유상 업그레이드 제외) 적용 관련 기술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소스코드 제공, 신규 기능 개발, 라이선스 증설 및 유상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 · 공급사 : **㈜바론아이티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162,096,000원(금일억육천이백구만육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 · 공급사명 ㈜바론아이티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바론아이티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

침입차단시스템(AXGATE 2300 등) 5대, 침입방지시스템(SNIPER ONE-i5000 등) 4대
스위치(FASTRION SX 800 등) 6대, 망연계장비(i-oneNet V3.0) 1조,
네트워크&시스템관리(WE.Net Manager V3.0, Framework) 1식,
접근제어시스템(NGS V6.0) 1식, CCTV 패스워드관리(CamPass V2.0) 1식,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24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월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제조사 전용 진단도구를 활용한 네트워크·보안장비 장애 및 보안정책 결함 분석 -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·트래픽 상태 및 오류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방화벽·침입방지시스템(IPS)의 정책 적용 및 보안정책 관련 전문 기술지원 - 망연계시스템의 연계 및 자료 전송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네트워크관리시스템(NMS·SMS)의 장비 상태 수집 및 장애 알림 기능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접근제어 및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의 정책·접속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보안정책 변경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펌웨어·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(유상 업그레이드 제외) 적용 관련 기술지원 - 장애 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 임시 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장비 증설, 하드웨어 수리·부품 교체, 신규 기능 개발, 라이선스 신규 구입·증설 및 유상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 청구 - 대체장비는 장애 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임시 지원하며, 장애 장비의 수리·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 - 펌웨어·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운영 설정·보안정책 변경은 서비스 영향 검토 후 사전 협의하여 수행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비엔피시스템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14,344,000원(금일천사백삼십사만사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비엔피시스템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비엔피시스템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무정전전원장치[MARCHE I (100kVA)] 1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8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분기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UPS 입·출력 전압·전류, 주파수 및 부하율 등 운전상태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정류기·인버터 회로의 동작상태 및 이상에 대한 정밀진단 - 축전지 전압·충전상태 및 성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UPS 내부 온도, 냉각팬 및 환기상태 등 주요 구성부 상태에 대한 기술 분석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UPS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기능 사용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장비 증설, 장비 수리, 부품·소모품 교체 및 축전지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 - 정전, 전원 전환 또는 축전지 방전이 수반되는 시험은 서비스 영향 검토 후 사전 협의하여 수행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에이알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12,408,000원(금일천이백사십만팔천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에이알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에이알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항온항습기(PA010-A2HS) 3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정기 기술지원 : 총24회/24개월 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정기 기술지원 외 현장 기술지원 : 하남시와 필요성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월 1회 센터 방문, 유지관리 수행업체와 합동 기술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- 기술문의 및 장애 발생 시 유선·현장 기술지원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정밀 진단 - 실내 온·습도 및 설정값 제어상태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압축기·송풍기 및 냉각·가습 기능의 운전상태에 대한 정밀진단 - 냉매계통의 운전상태 및 누설·성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가습장치의 작동상태·경보 기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장비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기능 사용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기술지원 결과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장비 증설, 장비 수리, 부품·소모품 교체 및 냉매 보충 비용은 별도 청구 - 장비 운전 중단이 필요한 점검·정비 및 설정 변경은 서비스 영향 검토 후 사전 협의하여 수행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시큐에버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,200,000원(금이백이십만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 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시큐에버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시큐에버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망분리장치[reverseWall MDS 3.0 RV4500(2대)] 1조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현장 기술지원 : 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유지관리 수행업체 요청에 따라 유선 기술지원 및 현장 기술지원 [장애 증상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(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)]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망분리장치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망분리 기능 및 네트워크 연계 이상에 대한 기술 분석 및 지원 - 소프트웨어 오류·장애에 대한 기술지원 - 장애 원인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정기 합동점검 없이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요청한 장애 건에 대하여 기술지원 - 협약기간 내 현장 방문은 총 4회까지 협약금액에 포함하며, 4회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(초과 방문 비용의 부담 및 지급은 하남시와 유지관리 수행업체 간 계약조건에 따름) - 서버 이전 및 ON/OFF 작업은 기술지원 범위에서 제외 -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아이티지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,200,000원(금이백이십만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아이티지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아이티지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비상벨 운영서버(IPMS-X02) 1대, 비상벨 단말기(BCS-30LS 등) 176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현장 기술지원 : 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유지관리 수행업체 요청에 따라 유선 기술지원 및 현장 기술지원 [장애 증상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(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)]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비상벨 운영서버 및 단말기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운영서버와 비상벨 단말기 간 통신·연결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비상벨 호출 및 운영서버의 수신·응답 기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장애 복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장애 원인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정기 합동점검 없이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요청한 장애 건에 대하여 기술지원 - 협약기간 내 현장 방문은 총 4회까지 협약금액에 포함하며, 4회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(초과 방문 비용의 부담 및 지급은 하남시와 유지관리 수행업체 간 계약조건에 따름) - 장비 증설,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송우인포텍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,200,000원(금이백이십만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 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송우인포텍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송우인포텍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도로방범 CCTV 운영서버(SW-NSB-72CH) 1대, 도로방범 CCTV(SW-NSB-S300-X 등) 33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현장 기술지원 : 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유지관리 수행업체 요청에 따라 유선 기술지원 및 현장 기술지원 [장애 증상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(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)]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차량번호 판독 운영서버 및 도로방범 CCTV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운영서버의 운전상태 및 오류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CCTV 전원·통신 상태 및 영상 송출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차량번호 판독 및 판독정보 전송 기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운영서버와 CCTV 간 연결 및 영상 수신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장애 복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장애 원인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정기 합동점검 없이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요청한 장애 건에 대하여 기술지원 - 협약기간 내 현장 방문은 총 4회까지 협약금액에 포함하며, 4회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(초과 방문 비용의 부담 및 지급은 하남시와 유지관리 수행업체 간 계약조건에 따름) - 장비 증설,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

○ 발주기관 : **경기도 하남시**

○ 제조사·공급사 : **㈜렉스젠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**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**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**별지 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**에 정한 사항 중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 별지는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**협약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**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**금2,200,000원(금이백이십만원)**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8 일

발주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렉스젠 (인)

【별지】

「기술지원 대상 및 범위」

1. 협약개요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하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
발주기관	경기도 하남시
제조사·공급사	㈜렉스젠
협 약 기 간	2027. 1. 1. ~ 2028. 12. 31.〔24개월〕
협 액 금 액	협약서 제3조에 정한 금액

2. 기술지원 대상 : 도로방범 CCTV 운영서버(RHL-HEH9) 1대,
도로방범 CCTV(REX-NEH5 CP4 등) 55대

3. 기술지원 범위

구 분	내 용
기술지원 주 기	- 유선 기술지원 : 수시 - 현장 기술지원 : 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
기술지원 방 법	- 협약기간 동안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유지·제공 - 유지관리 수행업체 요청에 따라 유선 기술지원 및 현장 기술지원 [장애 증상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지원(협약기간 내 총 4회 한정)]
기술지원 내 용	-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1차 장애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차량번호 판독 운영서버 및 도로방범 CCTV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- 운영서버의 운전상태 및 오류 로그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- CCTV 전원·통신 상태 및 영상 송출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차량번호 판독 및 판독정보 전송 기능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운영서버와 CCTV 간 연결 및 영상·판독정보 수신 이상에 대한 전문 기술 분석 및 지원 - 장비 운영·설정 및 장애 복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 - 장애 원인 및 조치내역 제공
특이사항	- 정기 합동점검 없이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요청한 장애 건에 대하여 기술지원 - 협약기간 내 현장 방문은 총 4회까지 협약금액에 포함하며, 4회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(초과 방문 비용의 부담 및 지급은 하남시와 유지관리 수행업체 간 계약조건에 따름) - 장비 증설, 하드웨어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별도 청구

※ 본 별지의 '유지관리 수행업체'는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'계약상대자'를 말한다.